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2026. 2. 2.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682호로 2026년 1월 19일 이예찬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다. 책무, 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안 제4조 ~ 제6조)

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안 제7조 ~ 제8조)

마.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의 설치(안 제9조 ~ 제10조)

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운영(안 제11조 ~ 제13조)

사. 통합지원회의, 수당, 사무의 위탁(안 제14조 ~ 제16조)

아.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등의 보호(안 제17조 ~ 제18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6. 1. 20.~2026. 1. 25.)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정 배경 및 취지

- 우리나라는 노화·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돌봄 대상자의 개별적 욕구와 삶의 방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 ▲시설과 병원 중심 돌봄 및 진료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의료급여 등 지출 증가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악화 우려 ▲시설 중심의 돌봄 제공에 따른 삶의 질 저하와 인권 문제 대두<sup>1)</sup> ▲보건·의료와 복지 부문 간 연계 부족 등 돌봄 서비스의 분절화 우려 등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게 됨.
-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

---

1) (노인 57.6%)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 '17 노인실태조사)  
(시설거주 장애인 약 57%) 시설 밖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길 희망( '12 국가인권위)

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26. 3.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현행 조례는 법 시행 이전에 관련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2022. 7. 14.)되었음.
- 한편,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가이드라인 안내」에 따라 법의 위임사항 및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는 2025년 6월 기준 총 10,335명으로 파악됨.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계	노인					65세 미만 장애인
	합계	재가 급여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맞돌 중점군	퇴원환자	심한 지체·뇌병변
10,335	9,674	4,230	609	19	4,816	661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목적)는 기존에 상위법으로 인용했던 「사회보장 기본법」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한 것임.

- 안 제2조(정의)는 ‘통합지원’,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본 조례가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 조례임을 명확히함.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통합지원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 시책 수립·시행 및 예산·인력 확보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달 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 자원 조달,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이는 통합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안 제3항은 시행규칙 2)제3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제35조, 「사회보장기본법」

2)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제16조 및 제19조<sup>5)</sup> 「지역보건법」 6)제7조에 근거하여 적절히 규정함

○ 안 제6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등 다양한 통합지원 사업을 규정함. 이를 통해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안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는 통합지원 대상자별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당사자 및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함. 이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돌봄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판단되며, 법 7)제13조에 근거함.

○ 안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는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돌봄

---

4)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6)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 상황을 점검·조정할 수 있도록 함. 법 8)제14조에 근거함.

○ **안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는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다 쉽게 상담·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는 구 본청 내에 통합지원 9)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는 협의체의 구성, 위원 자격,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8)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연계와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법 및 제4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점검과 변경·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 안 제13조(협의체의 운영)는 협의체 회의의 소집, 의결 요건 등을 규정하여 운영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함.
- 안 제14조(통합지원회의)는 개별 대상자에 대한 종합판정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변경 등을 위한 통합지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안 제15조(수당)는 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6조(사무의 위탁)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 조사·판정 업무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안 제17조(교육 및 홍보)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 안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는 통합지원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인권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 검토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규정한 위임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기본 체제를 구 차원에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영등포구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2026년 1월 통합 돌봄 전담조직인 ‘돌봄기획팀’(어르신복지과)을 신설하고, 2025년 11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행정적 준비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 자료

## 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 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군·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자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연계와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

법 및 제4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점검과 변경·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조정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면·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홍보 및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유형 분석
  3.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조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조사기준 개발
  4. 제12조의 종합판정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의 유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